

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

1. 견적에 부치는 사항

가. 공사개요

(단위: 원, 부가세 포함)

공 사 명	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보도블록 및 주차환경개선 토목공사
공 사 현 장	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45번길 69(수원병원)
공 사 내 용	토목공사(과업내용서 등 참조)
공 사 기 간	착공일로부터 120일
추 정 금 액	257,126,000원(①+②+③)
기 초 금 액	183,225,000원
① 추 정 가 격	166,568,182원
② 부 가 가 치 세	16,656,818원
관급자 설치 관급	0원
③도급자 설치 관급	73,901,000원

나. 업종 및 구성비율

(단위: 원, 부가세 포함)

업 종		기초금액(원)	구성비율(%)
종합공사업	토목공사업	257,126,000	100%
전문공사업	지반조성·포장공사업	210,847,000	82.00%
	구조물 해체·비계공사업	26,924,000	10.47%
	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	17,903,000	6.96%
	상·하수도설비공사업	1,452,000	0.56%

2.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

가. 공고기간: 2026. 8. 24.(월) 18:00 ~ 2026. 8. 31.(월) 10:00

다. 견적서(전자입찰) 제출기간: 2026. 8. 26.(수) 10:00 ~ 2026. 8. 31.(월) 10:00

라. 개찰일시: 2026. 8. 31.(월) 11:00

마. 개찰장소: 경기도의료원 재정운영팀 입찰집행관 PC

3.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

가. 본 입찰은 총액입찰, 지역제한(수원시), 소액수의,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.

나.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(서약서)를 제출하여야 함

니다.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'청렴계약서(서약서)'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(서약서) 제출을 갈음합니다.

다.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, 하도급지킴이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.

4.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

가.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의한 **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(토목건축공사업 포함) 또는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·포장공사업, 구조물해체·비계공사업,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, 상·하수도설비공사업 모두 등록한 자**이어야 합니다.

※ 본 공사에 필요한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본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서는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16조제3항에 따라 **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, 이를 시공 중 유지**하여야 합니다. 또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낙찰예정자가 되는 경우, 「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」 제11조에 의거하여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※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 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경우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나.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(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)까지 법인등기부상 **본점 소재지**(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·인가·면허·등록·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)를 계속하여 **수원시에 둔 업체**여야 합니다.

다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.

라.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.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」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

5. 현장설명

가. 본 공사의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.

나. 설계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오니 공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.

다. 설계서 열람 장소 : 경기도의료원 안전관리팀 (T.031-250-8883)

6. 입찰보증금

가.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.

나.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.

7. 견적(입찰)서 제출의 무효

가.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,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'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' 제11장 입찰유의서 '12-다'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.

나.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(법인의 명칭) 및 대표자(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, 각자 대표도 해당)가 법인등기부등본(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)의 상호(법인의 명칭)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**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**하여야 하며,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8. 낙찰자 결정방법

가.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$\pm 3\%$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천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며,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-1-나-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**A값(국민연금보험료, 국민건강보험료, 노인장기요양보험료, 보건관리비, 퇴직공제부금비, 안전관리비, 품질관리비 합산액)을 감액한 금액의 89.745% 이상**을 견적금액으로 제출한 자 중 **최저가격을 제출한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**합니다.

나. 유찰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거 재입찰을 시행합니다.

다.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**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**합니다.

라.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, 차순위 업체를 같은 방법으로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마.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.해제한 경우에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(행정안전부 예규)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.

9.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한 사후 정산

가.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(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)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.(설계서등의 변경으로 직접노무비가 증.감될 경우 그 증.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

료를 조정하여야 함)

(단위 : 원)

A값 (합산액)	국민건강 보 험 료	국민연금 보 험 료	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	퇴직공제 부 금 비	산업안전 보건관리비	품질 관리비
8,771,233	1,635,794	2,161,342	214,943	1,046,544	3,712,610	-

나.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, 국민연금보험료, 산업안전관리비, 환경보전비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, 사용내역서,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.

10. 하도급 관련 사항

- 가. 하도급시 「건설산업기본법」, 「전기공사업법」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나.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「건설산업기본법」, 「전기공사업법」,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,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,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다.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11.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

- 가.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
 - 나.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.
- 다만,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, 건설업자,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
12.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

가.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·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밖의 사람의 생명,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.

«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(제4조, 제9조) »

- | |
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·예산·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③ 중앙행정기관·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④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|
|--|

13.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에 따른 안내사항

- 가.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,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공사의 경우 **전자대금지급시스템「하도급 지킴이」**를 이용합니다.
- 나.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「하도급지킴이」이용 확약서'를 제출하여야 하지만,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「하도급지킴이」이용 확약서'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. 아울러, **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처에 제출**하여야 하며,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.
- 다. 낙찰을 받은 자는 「하도급지킴이」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. 다만, 하도급자(장비·자재업체 포함)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.
- 라. 또한, 하도급 대금, 노무비, 장비·자재대금을 「하도급지킴이」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.
- 마.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, 노무비, 장비·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.
- 바.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'나라장터-하도급지킴이-시스템 사용 안내(업체)'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4. 기타 사항

- 가.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,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(공사입찰유의서), 공사계약일반조건, 설계서, 과업지시서 등

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.

나.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다. 경기도의료원 반부패 시책의 일환으로 입찰참가자는 경기도의료원 퇴직자 영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라.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,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마.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.

바.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이 2천만원(부가가치세 제외)이상 일 경우 청구금액의 1.5%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.

사. 문의처 :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경기도의료원 안전관리팀(T.031-250-8883)

계약에 관한 사항 경기도의료원 재정운용팀(T.031-250-8857)

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콜센터(☎1588-0800)

위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8. 24.

경 기 도 의 료 원 재 무 관



경기도의료원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**입찰 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의료원 임직원이 금품,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
부조리 신고 : 경기도의료원 핫라인(☎031-250-8811) 및 헬프라인 익명 신고(<http://www.medical.or.kr/메인페이지>)와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부패신고 상담 코너(<http://www.medical.or.kr/고객마당/부패신고상담>)